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197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7. 13.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이 2020. 12. 22. 개정, 2021. 1. 1.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용어 및 관리기준을 보완 및 개선하여 보조금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'정액보조금'을 '운영에 필요한 보조금'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,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 관리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 (안 제8조부터 제12조)
- 나.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법규를 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(안 제16조)
- 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19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협의기관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 - 2) 입법예고(2022. 6. 8 ~ 2022. 6. 28) 결과 : 의견 없음
 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 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 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 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(여성가족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제1항 및 제19조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제목 “(적용범위)”를 “(다른 법령과의 관계)로 하고, “문화원”을 “금천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금전·기타”를 “금전 및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대해”를 “대하여”로 한다.

제5조제8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정액보조금”을 “운영에 필요한 보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보조금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의 제목 “(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등)”을 “(보조금의 청구 등)”으로

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이자, 구 정액보조금”을 “이자”로, “년도 사업비가”를 “연도 사업비 등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업별로 보조금”을 “보조금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)”을 “(보조금의 결정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정액보조금을 매월”을 “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분기”로, “월초”를 “분기 초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정액 또는 사업별 보조금”을 “보조금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사업별 보조금의 정산)”을 “(보조금의 정산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업별 보조금”을 “보조금”으로, “다음 달”을 “후 30일 이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업별로 지원받은”을 “지원받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회계연도마다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”을 “회계연도마다 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, 구 정액보조금,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10조(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)

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이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11조(보조금의 교부) ①

구청장은 정액보조금을 매월 초에 균등하게 교부하고,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월초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정액 또는 사업별

이자-----

----- 년도 사업비 등이 -----

-----.

② 보조금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보조금의 결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각호-----

-----.

③ ----- 해당

-----.

제11조(보조금의 교부) ① -----

--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 분기 -----

----- 분기 초-----
-----.

② ----- 보조금-----

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, 교부방법,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.

③ (생략)

제12조(사업별 보조금의 정산) ①

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다음 달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14조(회계관리 등) ①·② (생략)

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이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 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15조(사무의 검사·감독) ①

구청장은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적정한

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
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
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
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
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·서류
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
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
다.

②·③ (생략)

제16조(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
출)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
다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
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
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
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
출) ----- 회계연도마
다 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
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7
조제1항 -----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안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「서울특별시 금천
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
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
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
연 락 처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09. 4. 6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572호, 2009. 4. 6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및 제19조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금천문화원(이하 "문화원"이라 한다)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3조(기금의 출연 및 조성) ①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.

② 문화원장은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·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지방문화원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·기타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
제4조(국·공유재산의 사용)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·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)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·보급·보존·전승 및 선양
2. 향토사의 조사·연구 및 사료의 수집·보존
3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
4.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·보존 및 보급
5. 지역전통문화의 국내·외 교류
6.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
7.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
8.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제6조(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) ① 기금 및 보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 관리한다.

② 기금은 「은행법」,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신용협동조합법」, 「새마을금고법」, 「상호저축은행법」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채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% 이상은 매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
2. 금융기관별 기금예탁현황 및 발생이자추계
3. 기타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문화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.

제9조(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등)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, 구 정액보조금,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
2.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
3.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
4. 보조사업의 효과

5.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

제10조(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)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1. 법령과 조례, 예산목적에의 배치 여부
2.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
3.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
4.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

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이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11조(보조금의 교부) ① 구청장은 정액보조금을 매월 초에 균등하게 교부하고,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월초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정액 또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, 교부방법,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.

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사업별 보조금의 정산) ① 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다음 달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13조(보조금의 교부중지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법령,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
2.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, 또는 중단하였을 때
3.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

②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교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4조(회계관리 등) 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.

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이 제5조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 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④ 기금, 보조금,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5조(사무의 검사·감독) ① 구청장은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등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·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)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(제572호, 2009.04.06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지방문화원진흥법

제19조(조례의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1. 12. 28.]

제2조 삭제 <2020. 9. 8.>

제3조(지방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알리고,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② 법 제3조의2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·육성 정책의 기본방향
 2.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·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
 3.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
- ③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[본조신설 2020. 12. 22.]

제4조 삭제 <2020. 9. 8.>

제5조 삭제 <2020. 9. 8.>

제6조 삭제 <1999. 3. 3.>

제7조 삭제 <2020. 9. 8.>

제8조 삭제 <1997. 12. 31.>

제9조(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)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. <개정 2020. 9. 8., 2020. 12. 22.> [전문개정 2011. 12. 28.]

제10조(경비의 보조 등)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,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[전문개정 2011. 12. 28.]

제11조 삭제 <2009. 12. 22.>